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 이물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이물은 무엇인가요?



이물이란?

정상적으로 식품에 함유되어서는 아니되는 그 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합니다.

이물 종류

| 분류 | 내용 |
|-----|---|
| 동물성 | 머리카락, 혈액, 손톱, 파리, 모기 등 동물 및 곤충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
| 식물성 | 나무조각, 종이, 실, 곰팡이 등 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
| 광물성 | 못, 유리, 비닐, 플라스틱, 고무 등의 금속, 광물, 수지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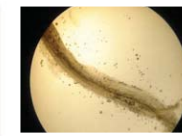


이물로 오인 · 혼동하지마세요~!

식품은 수많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원료성분을 곰팡이, 벌레 등으로 오인 · 혼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뭇가루, 곰팡이로 오인)



(파인애플심, 실로 오인)



(씨앗, 벌레로 오인)



이물은 인체에 해로운가요?



모든 이물이 해로운 것은 아니며, 식품 종류, 이물 종류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날카로운 칼날, 유리 등은 섭취 시 인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식품에서 이물은 왜 나오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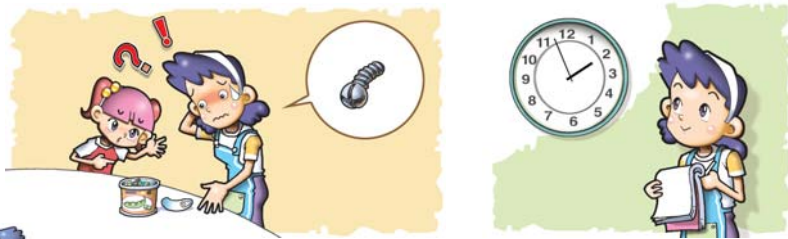


식품은 제조에서 소비자가 최종 섭취하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 판매자, 제조자의 부주의 등으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쇧가루,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 일부 이물은 기술적 한계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Contents

| | |
|----------------------------|----|
| 이물은 무엇인가요? | 01 |
|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 02 |
| 이물 신고방법 및 조사절차는 4가지가 있습니다. | 04 |
| 이물 원인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다. | 06 |
| 2010년 이물 신고·보고 현황 | 08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받으세요! | 09 |

1 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발견 일시를 확인합니다.



이물이 식품의 보관 또는 조리중에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2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하여 서늘한곳에 보관합니다.



이물을 분쇄·훼손하시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워요.

3 식품 포장지,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식품포장지는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4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합니다.

▶ 제조회사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제품 표시면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 '국번없이 1399'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www.kfda.go.kr/cfscr)로 신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www.kfda.go.kr/cfscr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역번호+1399'로 신고하세요.

잠깐!

- 업체의 수거·방문시
'제품 수거 인수증'을 받고,
업체에 이물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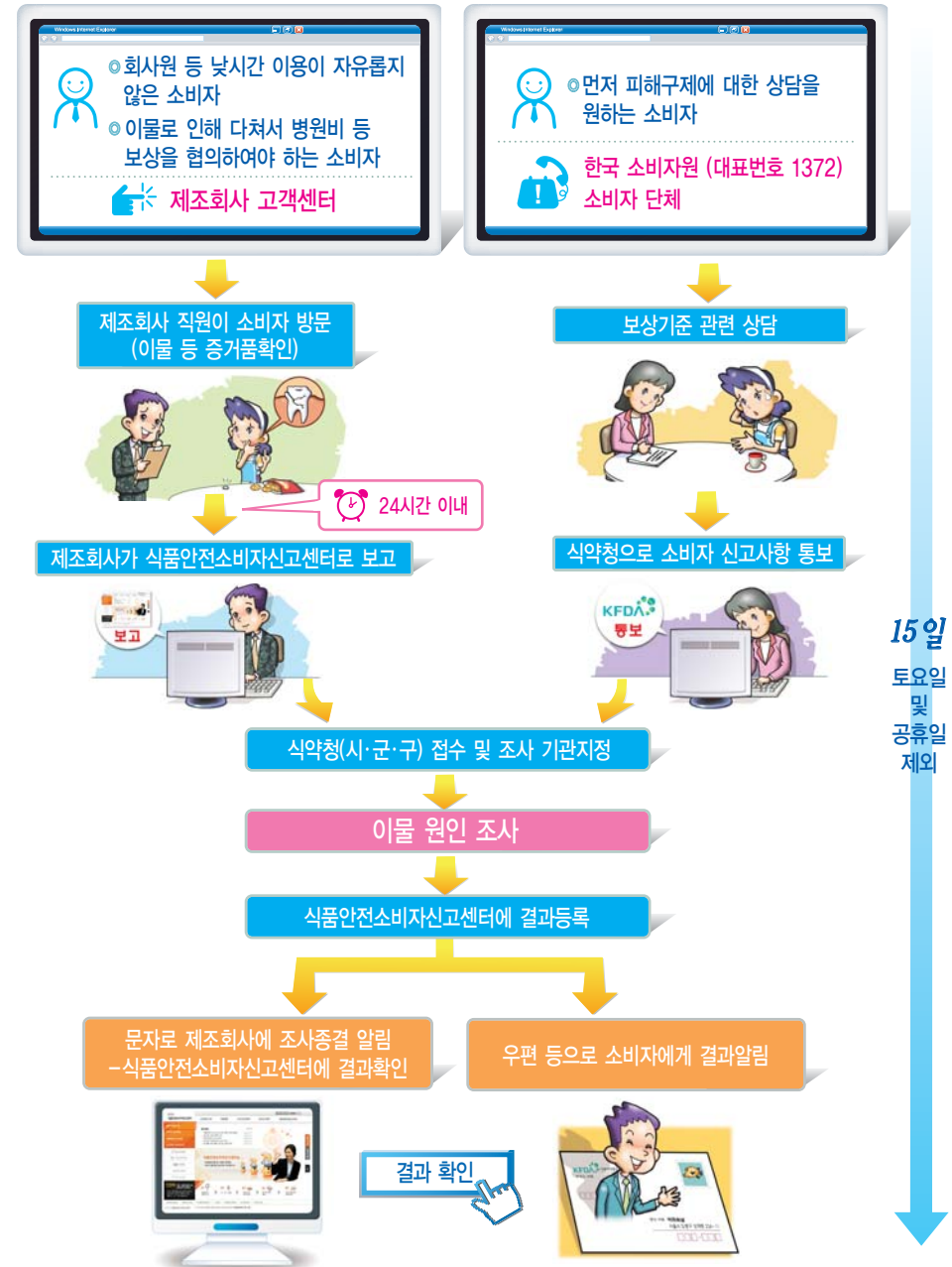
| | |
|--------|------------------------------------|
| 고객인적사항 | 성명 : (인) 연락처 : |
| 제품정보 | 제품명 : 내용량 : 유통기간 : 수거내용 : |
| 수거일 | |
| 직원인적사항 | 성명 : (인) 연락처 : |

제품 수거 인수증(예시)

이물 신고방법 및 조사절차는 4가지가 있습니다.



15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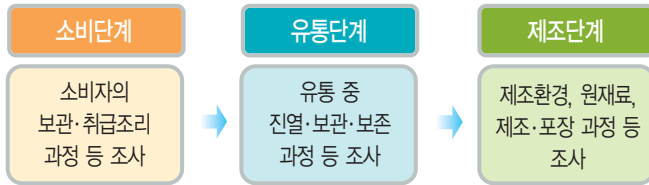


15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원인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원인조사는 소비자, 판매업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소비단계, 유통단계, 제조단계 순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원인 조사는 누가 하나요?

소비, 유통단계는 시·군·구에서 조사하며, 제조단계는 이물의 위해성에 따라 식약청과 시·군·구가 나누어 조사합니다.

| 조사기관 | 조사대상 이물의 범위 |
|-------|--|
| 식약청 | -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하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3 mm 이상 크기의 유리조각·플라스틱조각·사기조각·알루미늄조각, 칼날, 못, 스테플러침 등 -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
| 시·군·구 | - 식약청 조사대상 이물을 제외한 모든 이물 |



소비자에 대한 조사는 왜 하나요?

이물 발견 경위, 이물 등 증거품 확인을 위하여 소비단계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식품을 보관·조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이물이 들어 갈 수도 있으므로 소비단계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명확하게 원인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걱정하지 마세요~

민원인의 신상정보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입력한 개인정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므로 안심하여도 됩니다.



이물이 언제 들어갔는지 원인을 모두 밝힐 수 있나요?

이물의 특성 상 다양한 경로로 혼입될 수 있어 객관적으로 이물 혼입원인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물 분실 등 증거 불충분 또는 소비자의 조사거부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물이 들어간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도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제조 환경 및 공정 등을 조사하고 시설, 공정 등을 개선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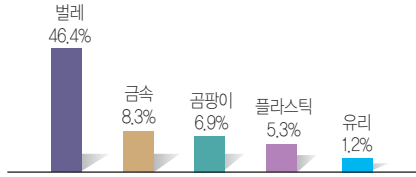
이럴때는 조사가 어려워요!

1. 이물을 버렸어요. ⇨ 이물 선별 테스트 등을 할 수 없어 제조단계 조사가 미흡할 수 있어요.
2. 이물 발견 후 너무 늦게 신고했어요. ⇨ 이물 등 증거품이 변질될 수 있어요.
3. 포장지를 버렸어요. ⇨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4. 유통기한이 수개월 지난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어요.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워요. 제품에 표시된 보존방법, 유통기한을 지켜주세요.
5. 여러 식품을 함께 조리하여 찌개 등 음식을 먹다가 이물을 발견했어요. ⇨ 어떤 식품에 원인이 있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2010년 이물 신고·보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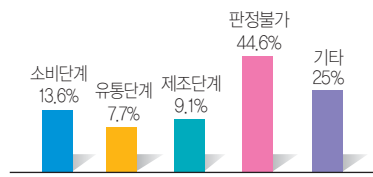
신고·보고 건수가 가장 많은 이물은 벌레입니다.



〈이물별 신고·보고 현황〉



이물이 들어간 단계는 소비단계 > 제조단계 > 유통단계 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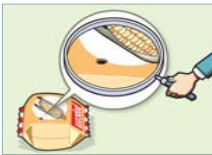


〈이물 원인 조사결과 현황〉

비닐도 뚫는 화랑곡나방 유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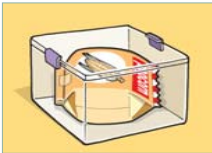
- 쌀벌레로 알려진 **화랑곡나방 유충**은 강력한 이빨과 턱이 있어 비닐, 알루미늄 호일, 얇은 판지 등을 갈아서 뚫고 들어갈 수 있으며, 곡물, 씨리얼, 초콜릿, 라면, 빵, 과자류 등의 포장지에 구멍을 내고 들어가 내용물을 먹고 성장합니다.
- 이 해충은 기온이 일정한 실내에서 자주 발견되고, 가정내, 마트, 식품 제조업소나 창고, 운송 차량 등에서 서식합니다.



1. 제품 포장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난 제품은 해충이 침입하였거나 곰팡이가 생긴 제품일 수 있어요.



2. 식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히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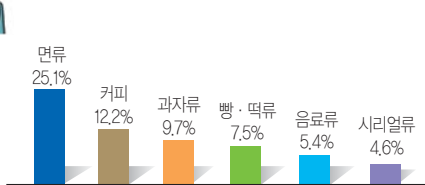
3. 개봉한 식품은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
씨리얼 등 여러번 나누어 먹는 제품은 집게 등으로 단단히 밀봉하거나 플라스틱 통 등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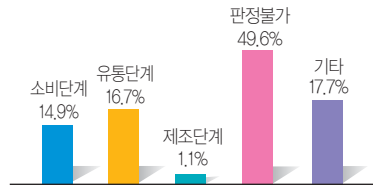
4. 장기간 보관하는 식품은 바닥에서 떨어진 선반 등에 보관



이물 신고·보고 건수가 가장 많은 식품은 면류, 커피지만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식품유형별 신고·보고 현황〉



〈면류의 이물 원인 조사결과 현황〉

※ 기타 : 오인신고, 자진 취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받으세요!



이물이 들어 있는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부주의로 이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
|----------------------|--|
| 이물이 혼입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용기 파손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small>*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함</small>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1호)



피해보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물 발견을 거지로 신고한 자
- 식약청 등에 소비자의 이물 발견 신고를 거지로 보고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 제98조)